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03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김준혁 • 이수진 • 김문수

안규백 · 서미화 · 박희승

박지원 • 복기왕 • 이언주

박정현 • 박해철 • 김기표

박지혜 • 권칠승 • 조 국

부승차 · 오세희 · 채현일

염태영 · 허성무 · 이광희

김 윤・김주영・강유정

송옥주 · 최민희 · 추미애

한병도 · 정성호 · 김영환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 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사편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제3항 후단 신 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 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 6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를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로,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 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 니 된다.

교육부장관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통령은 위원장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 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 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 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후 ----. 대통령 <u>단</u> 신설> 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 · 미화하 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 는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역사에 대한 연구경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 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자를-----위촉 한다. 교육부장관은 일본 제국 정한다. <후단 신설> 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 을 정당화 · 미화하거나 찬양 · 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 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②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 - 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통령은 위원장이 일본 제 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 관을 정당화 · 미화하거나 찬양 ·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 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 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u>는 경우</u>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